

고 시

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20-186호

-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-
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-21외 1필지 상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 수립중에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24일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1. 대상지

명 칭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	궁동 213-21외 1필지	50,691.0	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중

2. 제한사유

-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되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행위제한 하고자 함

3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(단,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)

4. 행위제한 내용

- 건축물의 건축 : 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(가설건축물, 대수선,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황, 전유부 분할 포함)

5. 행위제한 제외 사항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
나.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위한 행위
다. 기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

6. 관련도서 : 생략(구로구청 주택과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)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붙임 : 지형도면 1부. 끝.

궁동 우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위제한 지형도면 고시도

